

홍천군 공고 제2024-611호

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『친환경자동차법』 제11조의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신문고로 신고 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. 3. 20

홍 천 군



1. 공고내용: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2. 공고대상:

대상차량	성명	생년월일	주소	처분내용
57주*575	강*정	820629	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215, 207동 호	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(10만원)

3. 공고기간: 2024년 3월 20일 ~ 2024년 4월 4일 (15일간)

공고기간 내 의견제출 및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고, 미납 시 『국세징수법』 제24조제1항 및 『지방세법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(대체압류 포함)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4. 기타문의 :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(033-430-2620, FAX 033-430-2609
우 2512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93, 환경과)